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05926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0592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5339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C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영

변론 종결 2024. 8. 22.

판결 선고 2024. 11.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5339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1)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2022. 1.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2. 1. 27. 접수 제1903호,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2. 1. 27. 접수 제2520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2. 1.

27. 접수 제3563호,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13453호,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22. 1. 28. 접수 제847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2. 2. 3. 접수 제4553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2)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공동 피고들 부분 제외).

○ 제1심 판결에 등장하는 '피고 B'를 모두 '피고'로 고치고, 그 외 제1심 공동 피고들 앞에 기재된 '피고' 호칭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6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당시 추진하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공사시공권 제공 및 (근)질권, 근저당권 등 담보제공을 약속하면서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합계 4,265,740,166원을

대여하였는데, A가 약정한 공사시공권 및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2022.

1. 24. 위 대여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이러한 대여 및 담보 제공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은 A가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사업추진 위한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득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 내지 12,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에게 2021. 5. 12. 215,030,166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21. 8. 6.로 대여해준 것을 비롯해 2021. 10. 29.까지 합계 4,265,740,166원(= 2,465,030,166 + 500,000,000원 + 1,000,710,000원 +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중 일부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1. 5. 12.자, 2021. 5. 20.자)에 A가 피고에게 BR 공사시공권 제공, (근)질권, 근저당 등의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1. 5. 12.자 대여금액을 포함하여 총 2,465,030,166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 5.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담보와 관련하여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A가 일정 법인들의 주주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주식 근질권을 설정'하게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는 '근질권,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아울러 위 계약서에는 '주식 근질권 외 추가적인 담보를 2021. 5. 24.까지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 대여금액 중 2021. 5. 25. 대여할 금액인 1,250,000,000원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당시 A 소유 부동산 등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2021. 5. 25.자 대여를 비롯하여 그 후속 대여들이 그대로 진행되었던 점, ③ 위 대여가 순차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가 A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근저당권 등 담보 제공'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은 2022. 1. 24.로 위 각 대여 시점은 물론 최종 대여 시점으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을 두고 피고 주장과 같이 A가 피고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을 융통받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에게

설정해 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 2008다95663 판결을 원용하며 A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것이므로,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공동재산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차용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참조)으로 피고의 위 주장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A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A의 공동재산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의 사해행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16면 14행부터 제18면 아래에서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최초 대여 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A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다는 점, A에 대한 투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았다는 점, A의 사업능력을 신용할 수밖에 없었고, A의 재무상태와 그 밖의 채권자들의 존재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대여 시점 기준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A에 거액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경영진 상호 간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A의 경영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인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뒤늦게 A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A의 자금사정 악화를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BM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1,129,196,000원의 가압류등기와 주식회사 BN의 청구금액 2,308,200,000원의 가압류등기 등이 확인되고, 별지 1,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D의 선행

근저당권등기 역시 확인되므로, A의 변제자력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내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황성미

판사허익수

별지

- 1) 별지 관련, 원고가 제1심에서 원상회복에 대한 소만을 취하한 부분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 부분만 삭선으로 삭제하고, 소를 취하한 부분은 부동산 표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 부분을 모두 삭선으로 삭제한다.
- 2)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CI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모두 분리·확정되었다.